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류단지개발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당초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지 대상에 지원시설 포함(안 제25조)

1) 물류단지시설 외에 지원시설에도 환지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교육·연구·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허용

2)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모든 지원시설을 환지가 가능토록하고, 환지 방법 및 절차를 「도시개발법」에 따르도록 규정

나. 타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47조)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에 따른 기관명(“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수산청”) 변경사항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를 “시행자(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1.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u>시행자</u>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지방해양항만청장</u>에게 위임한다. 1. ~ 8. (생략) ③ (생략)	④ <u>시행자(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방해양수산청장</u>-----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013